

전북대학교 종합감사 결과 및 처분내용

1. 감사 개요

- 감사기간 : 2015. 9. 14. ~ 9. 23.
- 감사인원 : 11명

2. 감사결과 지적사항

가. 유형별 지적건수

구분	인사·복무	예산·회계	연구비	입시·학사	시설·가재·학교 안전	계
지적	11	12	15	9	7	54

나. 세부 지적내용 및 처분

지적건명	지적내용	처분
【인사·복무】		
1. 일반직 승진업무 처리 부적정	○ 근속승진 가능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장기근속자를 일반승진에서 제외하고 후순위자를 일반승진자로 결정 【공무원 임용규칙(행안부 예규)제9조 제1항 및 제6항】	○ 주의(3명) - 전 총무과장 행정4급 ○○○ 등 3명
2. 근무성적 평정 부적정	○ 근무성적 평정시 평가대상 공무원 4명의 동일평가 단위별 서열순위 임의 변경 【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, 공무원 성과평가 등 운영 요령(교육부)】	○ 경고(2명) - 전 총무과장 행정4급 ○○○ 등 2명
3. 특별휴가 사용 등 부적정	○ 직원 4명이 특별휴가를 부적정하게 사용하고 그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 합계 272,750원 과다 수령	○ 주의(7명) - 전 창업교육센터장 교수 ○○○ 등 7명

지 적 건 명	지 적 내 용	처 분
	<p>【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 및 제20조 제1항 관련 [별표2],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 제5항】</p>	<p>○ 시정(회수) -과다 지급된 연가보상비 합계 272,750원을 관련 자들로부터 각각 회수 하여 관련 회계에세입조치</p>
4. 교원 징계처리 부적정	<p>○ 교수 2명 관련 범죄처분결과 통보에 대하여 공무원 비위사건처리기준에 의한 검토 절차 없이 내부종결 처리</p> <p>○ 표창 등 감경 사유 없이 부당감경 의결한 2건에 대하여 심사 또는 재심사 절차 없이 징계위원회 의결대로 처분</p> <p>【국가공무원법 제82조 제2항,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(대통령훈령 제247호, 2009.4.22.)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】</p>	<p>○ 경고(11명) - 전 교무처장 교수 ○○○ 등 11명</p>
5. 교원 복무 부적정	<p>○ 교원 47명이 88회에 걸쳐 소속 학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공무외 국외여행 실시</p> <p>【국가공무원법제56조, 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(구 행정안전부 예규 제384호, 2011.12.1.), 전북대학교 위임 전결규정 제3조 제2항의 [별표2]】</p>	<p>○ 주의(47명) - IT정보공학과 교수 ○○○ 등 47명</p>
6. 조교 근무시간 학위 과정 수업참여	<p>○ 조교 4명이 근무시간 중 복무처리 없이 대학원 수업 참여</p> <p>- 위 복무 미처리 수강일을 연가보상일에서 제외하지 않아 연가보상비 합계 1,218,930원 과다 지급</p> <p>【국가공무원법 제58조,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4조, 국가 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9장】</p>	<p>○ 경고(4명) - 생물환경화학과 조교 ○○○ 등 4명</p> <p>○ 시정(회수) -과다 지급된 연가보상비 등 합계 1,218,930원을 관 련자 4명으로부터 각각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</p>
7. 교원 외부출장 부적정	<p>○ 출장시간 초과 여부 검토 없이 외부출장 승인(교원 7명)</p> <p>- 교원 27명이 52회에 걸쳐 연가 등 복무처리 없이 타대학 출장</p>	<p>○ 주의(36명) - 전 교무처장 교수 ○○○ 등 34명</p>

지 적 건 명	지 적 내 용	처 분
	【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9장, 전북대학교 교육 공무원 타교 출강 지침】	
8. 교원 금품수수 및 처리 부적정	○ 무용학과 지도교수가 학부모로부터 청탁성 금품 300만원 수수 - 대학은 금품수수 확인 후에도 징계의결요구 등 조치 미 실시 【국가공무원법 제61조, 교육공무원법 제51조 제1항, 전북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 제15조 제1항, 제21조 제4항 및 제22조】	○ 중징계 - 예술대학 무용학과장 교수 ○○○ ○ 경고(5명) - 총장 등 5명
9. 교원 채용 전공 적부 심사 부적정	○ 동일한 연구실적에 대하여 전공 일치도 평가 불일치 【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 제2항,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4조의3 제3항 제1호, 전북대학교 전임교원 신규 채용 지침 제10조 제1항 및 제2항】	○ 경고(4명) - 영문과 교수 ○○○ 등 4명
10. 연구결과 발표물 미제출 및 지연제출	○ 교원 28명이 연구결과물 제출기한 내 미제출 - 교원 18명이 연구결과물 지연 제출 【전북대학교 학칙 제22조 제2항, 전북대학교 연구 교수 규정 제7조 제1항】	○ 경고(46명) - 수학과 교수 ○○○ 등 41명 ○ 시정(회수) - 연구결과물을 제출하지 아니한 교수 ○○○ 등 26명으로부터 연구비 합계 120,000천원을 회수하여 관련회계에 세입조치
11. 연구교수 선발 부적정	○ 전임교원이 6명인 경우, 연구교수 1명만 선발하게 되어 있는데도, 추가 충원을 이유로 1명 추가 선발 ※ 전임교원 7명 이상 10명 이내 : 연구교수 2명 선발 가능 【전북대학교 학칙 제22조 제2항, 전북대학교 연구 교수 규정 제5조 제6호】	○ 경고(6명) - 전 교무처장 교수 ○○○ 등 6명
【예산·회계】		
12. 보직수행경비 지급 부적정	○ 보수를 지급할 수 없는 비상근 이사장에게 보직수행경비를 업무추진비로 편성하여 정액 지급(2명, 33,819천원)	○ 주의(6명) - 전 기획처장 교수 ○○○ 등 6명 ○ 시정(회수) - 부당 지급된 보직수행

지 적 건 명	지 적 내 용	처 분
	<p>【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9항, 재단법인 전북대학교 발전지원재단 정관 제14조, 전북대학교 발전기금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】</p>	<p>경비 합계 33,819천원을 관련자들로부터 각각 회수하여 관련회계에 세입조치</p>
<p>13. 자기주도학습지원비 지급 부적정</p>	<p>○ 직무관련성 및 업무 직접 활용 가능성이 높은 민간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을 위해 편성된 자기주도학습지원비를 영화공연 관람, 교양도서 구입 등에 부당 사용(직원 306명, 201,380,140원)</p> <p>【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5조,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(행안부예규), 2014회계연도 전북대학교 기성회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, 2014년도 교육부 교육훈련 기본계획 및 2014년도 직원 교육훈련 계획】</p>	<p>○ 경고(3명) - 전 총장 등 3명</p> <p>○ 주의(2명) - 전 총무과 행정5급 ○○○ 등 2명</p> <p>○ 시정(회수) - 부당하게 지급된 자기주도 학습지원비 합계 201,380,140원을 ○○○ 등 관련자 306명 으로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 조치</p>
<p>14. 용역 수의계약 부적정</p>	<p>○ 일반경쟁 입찰대상인 용역계약을 수의계약 체결 (3건, 372,364 천원)</p> <p>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및 제30조 제2항】</p>	<p>○ 경고(4명) - 전 정보전산원 전산5급 ○○○ 등 4명</p> <p>○ 주의(2명) - 전 정보전산원장 교수 ○○○ 등 2명</p>
<p>15. 초빙강사 강사료 등 지급 부적정</p>	<p>○ 초빙강사 9명에게 강사료 외에 사례금 지급(9건, 645천원)</p> <p>【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(기획재정부, 2012-2015), 국립 대학 비국고회계 관리규정 제12조 제1항에 의한 별표(기성회 회계 세입세출 예산과목 내역표)】</p>	<p>○ 경고(3명) - 전 박물관장 교수 ○○○ 등 3명</p>
<p>16. 대학명의 계좌 예·결산 미편입 등 관리 부적정</p>	<p>○ ‘교환학생 장학생 관리 계좌’ 등 계좌를 관련 회계 예·결산에 편입하지 않고 운영(16개 계좌, 327,111,940원)</p> <p>○ 친목회 등 임의단체 계좌를 대학 명의로 개설·관리 (33개 계좌, 187,638,287원)</p> <p>○ 거래실적이 없는 휴면계좌(56개 계좌, 2,111,403원) 장기 방치</p>	<p>○ 기관경고</p> <p>○ 시정 - 대학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별도 관리되는 16 개 계좌 327,111,940원 (‘15.8.25.기준)을 해당</p>

지 적 건 명	지 적 내 용	처 분
	<p align="center">【국립대학 비국고회계 관리규정 제7조 및 제10조, 국립 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】</p>	<p>회계로 편입조치하고,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학과 관련이 없는 친목회 등 임의단체가 관리하는 계좌는 즉시 해지하며, - 대학 명의 등 56개 휴면 계좌는 해지하고 잔액 2,111,403원(15.8.25.기준)은 해당 회계에 세입조치
<p>17. 주차관리보조원 임용 및 인건비 지급 부적정</p>	<p>○ 총무과장과 협의 없이 계약직원을 평생교육원으로 임용하고 인건비는 평생교육원 수입대체경비에서 지급</p> <p align="center">【국립대학 국유재산 활용 활성화 방안(교육과학기술부 예산담당관-2546(2011.05.20.), 전북대학교 기간제 계약직원 규정(2007.11.1.시행)】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주의(5명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평생교육원장 ○○○ 등 5명 ○ 통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향후, 주차관리직원(계약직) 인건비 지급은 사무국 인건비에서 지급
<p>18. 보육교사교육원 수당 지급 부적정</p>	<p>○ 자기소관업무(회계) 담당 직원에게 별도수당 지급 (4명, 11,700천원)</p> <p align="center">【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(기획재정부),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조】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경고(8명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보육교사교육원장 교수 ○○○ 등 8명 ○ 시정(회수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부당 지급된 보육교사 교육원 회계책임수당 11,700천원을 ○○○ 등 관련자 4명으로부터 각각 회수 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
<p>19. 자기소관 업무관련 연구비 지급 부적정</p>	<p>○ 교무부처장 등 연구비 업무담당자에게 정책연구비 지급 (11명, 41,320천원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경고(21명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획조정본부장 등 17명 ○ 시정(회수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자기소관 업무담당자에게 지급된 연구비 39,320천원을 ○○○ 등 관련자 11명으로부터 각각 회수

지 적 건 명	지 적 내 용	처 분
	<p>【국립대학 비국고회계 관리규정 제5조 제5항,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(2012~2015)】</p>	<p>하여 산학협력단회계에 세입조치</p>
<p>20. 가족수당 및 복지 포인트 수령 부적정</p>	<p>○교직원 52명이 사망 등으로 인한 부양가족 변동을 신고하지 않아 가족수당 합계 23,980천원, 맞춤형 복지 점수 합계 3,550포인트(3,550천원) 부당 수령</p> <p>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및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7장,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10조 및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10장】</p>	<p>○ 주의(52명) - 신소재공학부 교수 ○○○ 등 52명</p> <p>○ 시정(회수) - 부당하게 지급된 가족수당 980천원을 생물환경화학과 교수 ○○○ 등 2명으로부터 각각 회수하여 관련회계에 세입조치</p> <p>○ 통보 - 맞춤형복지점수를 부당수령한 교수 ○○○ 등 28명에 대하여 향후 맞춤형복지점수 배정 시 부당수령한 복지점수만큼 차감</p>
<p>21. 격려금 지급 부적정</p>	<p>○ 업무와 무관한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의원대회 격려금 등으로 지급(4,000천원)</p> <p>【2013~2014년 전북대학교 기성회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, 2013~2014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(기획재정부)】</p>	<p>○ 경고(3명) - 전 총무과장 ○○○ 등 3명</p>
<p>22. 계절수업 관련 연구 보조비 등 지급 부적정</p>	<p>○ 교원 283명에게 강사료 외 수당 성격의 연구보조비 211,641천원, 교재연구비 176,730천원 별도 지급</p> <p>【국립대학 비국고회계 관리규정 제5조 제5항, 2012~2014년도 기성회회계 예산 편성지침】</p>	<p>○ 경고(13명) - 전 교무처장 교수 ○○○ 등 13명</p> <p>○ 통보 - 향후, 강사료 외 연구보조비 등 지급 중단</p>
<p>23. 여비 중복 수령 등 부적정</p>	<p>○ 동일 출장에 대해 2개의 연구과제에서 출장여비를 중복수령하는 방법 등으로 여비 부당수령(46명, 5,529,198원)</p>	<p>○ 경고(44명) - 전기공학과 부교수 ○○○</p>

지 적 건 명	지 적 내 용	처 분
	<p align="center">【국가공무원법 제66조, 공무원 여비 규정 제4조 및 제5조】</p>	<p>등 44명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시정(회수) - 중복 지급된 여비 5,529,198원을 ○○○ 등 관련자 46명 으로부터 각각 회수하여 관련회계에 세입조치
<p>【연구비】</p>		
<p>24. 연구교수 과제수행 부당</p>	<p>○ 연구종료 후 4년이 지나 연구주제를 임의 변경 후, 제자의 박사학위 논문을 단순 요약·정리하여 연구 교수 결과물로 제출</p> <p align="center">【전북대학교 연구교수 규정 제4조 및 제7조 제1항】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경징계 - 경영학부 교수 ○○○ ○ 시정(회수) - 부당 지급된 연구비 500만원을 교수 ○○○ 으로부터 회수하여 관련회계에 세 입조치 ○ 개선 - 연구교수 연구실적을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 연구비를 회수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
<p>25. 학술논문 부당게재 및 논문게재료 부당 수령</p>	<p>○ 자신이 지도한 제자의 학위 논문을 단순 요약·정리* 하여 학회지에 게재하고 논문게재료 1,500천원 부당 수령</p> <p>* 제자는 주저자 또는 공동저자로 미표시</p> <p align="center">【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및 전북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설치·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, 전북대학교 연구비 관리 규정 제9조】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경징계(2명) - 기계시스템공학부 교수 ○○○ 등 2명 ○ 시정(회수) - 부당하게 지급된 논문 게재료 합계 1,500천원을 교수 ○○○ 등 2명으 로부터 각각 회수하여 관 련회계에 세입조치
<p>26. 교재개발비 집행 부적정</p>	<p>○ 교재를 직접 개발하지 않고 수강생들이 제출한 결 과보고서를 단순 보완·편집하여 결과물로 제출하고 교 재개발비 4,000천원 부당 수령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경고 - IT정보공학과 교수 ○○○ ○ 시정(회수) - 부당 지급된 교재개발비 4,000천원을 교수 ○○○

지 적 건 명	지 적 내 용	처 분
	<p>【전북대학교 특성화사업 사업비 집행기준 세부지침, 전북대학교 연구비 관리 운영지침 제11조 제1항 관련 별표3 “연구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】</p>	<p>로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</p>
<p>27. 연구비 예산편성 부적정</p>	<p>○ 교육부와 ‘15.7월 연구활동영역 연구비를 4,678백만원으로 편성하기로 협의하고도, - 교육부 협의없이 ‘대학회계 세출예산’ 항목에 없는 연구교수 연구비, 논문게재료 등 연구비 4,060백만원을 임의 추가 편성</p> <p>【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,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22조】</p>	<p>○ 시정 - 교육부와 협의되지 아니하고 임의로 편성한 연구비 합계 4,060백만원을 감액</p>
<p>28. 교내연구과제 결과물 미제출</p>	<p>○ 교원 47명*이 교내 연구과제 제출기한까지 연구결과물 미제출 * 연구기반조성비 : 32명, 신입교수연구비: 15명</p> <p>【전북대학교 연구기반조성비 지원계획(2009~2015) 및 전북대학교 신입교수 연구비 지원계획(2009~2015)】</p>	<p>○ 경고(44명) - 작물생명과학과 부교수 ○○○ 등 44명</p> <p>○ 시정(회수) - 연구과제 결과물을 미제출한 부교수 ○○○ 등 28명에게 지급된 연구비 합계 224,004천원을 관련자들로부터 각각 회수하여 관련회계에 세입조치</p>
<p>29. 공무택시 운영 부적정</p>	<p>○ 교통비 지급기준 28,536천원 보다 116,445천원을 초과하여 공무택시 이용비 지급(직원 1,006명) - 위 공무택시 이용 직원 1,006명의 일비를 감액하지* 않고 지급하여 일비 8,380천원 초과 집행 ※ 공용차량 이용 시 일비의 1/2만 지급(교육부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)</p> <p>○ 공무택시를 운행하지 않은 경우(391일)에도 대기콜 비용* 27,370천원 지급 ※ 학교에 상주하면서 교직원의 사용 요청 시 운행(기본료 : 80~110천원, 미운행 시 대기콜 비용 : 70천원)</p>	<p>○ 경고(4명) - 전 산학협력단장 등 4명</p> <p>○ 시정(회수) - 초과 집행한 일비 합계 8,380,000원을 ○○○ 등 1,006명으로부터 회수하여 관련회계에 세입조치</p> <p>○ 통보 - 여비규정 등을 위반하여 운영하고 있는 공무택시</p>

지 적 건 명	지 적 내 용	처 분
	<p>【공무원 여비 규정 제4조, 제16조, 교육부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,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제15조 및 제17조】</p>	<p>제도 폐지</p>
<p>30. 고교정상화 기여대학 정책제안비 지급 부적정</p>	<p>○ 단순설문 조사만 실시하고도 회의비 및 정책제안비 등 명목으로 참석자 70명에게 12,290천원 부당 지급</p> <p>【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, 대학의 신입생 유치 및 정원관리 부조리 개선(2009.10.1. 국민권익위원회 권고), 대학 신입생 유치 관련 가이드라인(2013.1.31.교육부),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예산 집행지침】</p>	<p>○ 경고(2명) - 입학관리본부장 교수 ○○○ 등 2명</p> <p>○ 통보 - 향후, 입학설명회 등에 참석한 교사 등에게 정책제안비 등을 국고 보조금에서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</p>
<p>31. 학생연구원 인건비 관리부당</p>	<p>○ 연구보조원 2명이 연구과제에 참여한 보조원 10명의 인건비 통장을 직접 관리하면서 합계 480,627천원을 용도불명으로 사용</p> <p>【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】 제12조 제5항 관련 별표2 “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”, 전북대학교 연구비 관리규정 제6조 및 전북대학교 연구개발비 관리지침 제44조】</p>	<p>○ 통보 - 다른 연구원들의 인건비 통장을 본인들이 공동 관리한 박사과정 ○○○ 등 2명에 대해 학칙 등에 따라 엄중 조치</p> <p><별도조치></p> <p>○ 고발(2명) - 연구원 인건비 등을 사적으로 사용한 ○○○ 등 2명을 「형법」 제355조 제1항 소정의 횡령 혐의로 고발</p> <p>○ 수사의뢰 - ○○○, ○○○가 연구책임자인 지도교수의 지시 또는 묵인없이 연구원 인건비 등을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보고는 어려우므로 교수 ○○○을 「형법」 제355조 제1항 소정의 횡령 혐의로 수사의뢰</p>

지 적 건 명	지 적 내 용	처 분
32. 백일홍데이 지원금 지급 부적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맞춤형복지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직원 124명에게 복지비 형태의 '백일홍데이' 지원금 32,100천원 중복 지급 <p>【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5조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(행안부 예규), 산학협력단회계처리 규칙 제15조 및 제17조】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경고(3명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 산학협력단장 등 3명 ○ 통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맞춤형 복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'백일홍데이' 지원금 제도를 폐지
33. 법인카드 부당 사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계약직원이 유흥주점 결제 등 목적으로 사업단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 후 카드 결제일 전후에 결제액 입금(47,440천원) <p>【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및 공공기관 법인카드 사용의 투명성 제고 방안(국민권익위원회),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(기획재정부)】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중징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글로벌부역전문가 양성사업단 계약직 ○○○
34. 법인카드 유흥업소 사용 부적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법인카드 사용을 금지하는 주점 등 유흥업소에서 법인 카드 사용(4명, 952천원) <p>【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(기획재정부), 공공기관 법인카드 사용의 투명성 제고방안(국민권익위원회)】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주의(4명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문헌정보학과 교수 ○○○ 등 4명
35. 산학협력단 보직 수행경비(월정직책급) 지급 부적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직제에 규정되지 않은 산학협력부단장 등 보직자 27명에게 보직수행경비(월정직책급) 합계 178,312천원 지급 <p>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조,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5항,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집행지침(기획재정부)】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경고(5명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 산학협력단장 등 5명 ○ 통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부적정하게 지급하고 있는 보직수행경비 지급 중단
36. 산학협력선도대학(LINK) 사업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직제에 없는 링크사업단장 등 9명에게 보직수행경비 합계 155,049천원을 기성회회계에서 지급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경고(6명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 산학협력단장 등 6명

지 적 건 명	지 적 내 용	처 분
보직수행경비 지급 부적정	<p>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조, 국립학교 설치령 제15조,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집행지침(기획재정부)】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통보 - 부적정하게 지급하고 있는 보직수행경비 지급 중단
37. 연구책임자 가족의 연구과제 참여 부적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자신이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자녀를 연구보조원으로 참여시키면서 직무회피 여부 관련 상담 등 미실시(11명, 19개 연구과제) <p>【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 및 제6조】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경고(11명) - 물리학과 교수 ○○○ 등 11명
38. 직무발명 특허권 개인명의 출원·등록 부적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직무발명 사항을 산학협력단에 신고*하지 아니하고 개인 및 공동명의로 출원·등록(9명, 11건) <p>* 교직원 등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사용자 등에게 신고해야 함</p> <p>【발명진흥법 제10조 제2항 및 제12조, 전북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규정 제3조, 제11조 및 제12조】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주의(9명) - 동물생명공학과 교수 ○○○ 등 9명 ○ 시정 - 교수 ○○○ 등 9명의 개인명의로 등록된 직무발명 특허권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권리 확보 절차 마련
【입시·학사】		
39. 출석미달자 학점 부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출석일수의 4분의 3 이상을 결석한 학생 2명에게 학점(C⁰ ~D⁰) 부여 <p>【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, 전북대학교 학칙 제71조 및 전북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20조】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경고(2명) - 수의학과 시간강사 ○○○ 등 2명 ○ 통보 - ○○○ 등 2명에게 부여한 학점 취소
40. 성적 임의 정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교원 4명이 성적정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○○○ 등 학생 18명의 성적을 임의 정정 <p>【전북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35조】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주의(4명) - 도시공학과 교수 ○○○ 등 4명
41. 보충강의 미실시 및 초과강의로 지급 부적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교수 15명이 국내출장 기간 중 발생한 수업 합계 67시간에 대하여 보충강의 미실시 - 교수 10명이 미보강 시수 합계 48시간에 대한 초과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경고(10명) - 산림환경과학과 교수 ○○○ 등 10명

지 적 건 명	지 적 내 용	처 분
	<p>강의료 1,570천원 부당 수령</p> <p>【고등교육법 제21조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, 전북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20조 및 제23조】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주의(5명) - 작물생명과학과 부교수 ○○○ 등 5명 ○ 시정(회수) - 부당 지급한 초과강의료 합계 1,570천원을 ○○○ 등 관련자로부터 각각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
42. 장학금 지급 부적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수업연한* 초과 학생 40명에게 국가장학금 27,674,490원 지급 * 수의예과 4학기, 건축학전공 10학기, 기타 학과 8학기 ○ 등록금 전액 규모를 초과하여 학생 18명에게 장학금 4,882,000원 지급 ○ 직전학기 성적기준 미달 학생 103명에게 '교내돈움 장학금' 등 173,698,200원 지급 <p>【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사업안내(2012-2015), 전북대학교 장학금 규정 제3조, 제7조 및 제43조】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경고(11명) - 전 학생처장 교수 ○○○ 등 11명 ○ 시정(회수) - 수업연한 초과자에게 지급한 국가장학금 합계 27,674,490원을 ○○○ 등 관련자 40명으로부터 각각 회수하여 한국장학재단에 반납 조치
43. 학생 징계처리 부적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무기정학 처분된 학생이 당연제적 되었다는 이유로 해당 징계사항을 학적부에 미등재 <p>【전북대학교 학칙 제96조 제1항 및 학생상벌 규정 제3조】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경고(3명) - 전 학생처장 교수 ○○○ 등 3명
44. 현장실습지도비 지급 부적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교원 본연의 업무에 해당하는 현장실습지도 명목으로 현장실습지도비 별도지급(604명, 47,650천원) <p>【고등교육법 제15조, 2013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(기획재정부) 및 교육부 현장실습 운영매뉴얼(2013)】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경고(2명) - 전 산학협력단장 교수 ○○○ 등 2명 ○ 시정(회수) - 부적정하게 지급한 현장실습지도비 합계 47,450천원을 교수 ○○○ 등 604명으로부터 각각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

지 적 건 명	지 적 내 용	처 분
45. 평생교육원 학습장 운영 부적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‘상담사 1급 야간반 과정’ 등 80개 평생교육과정을 관할청의 인가를 받지 않고 운영 <p>【평생교육법 제30조, 교육부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설치 변경 보고 및 운영 시 참고사항 알림(평생학습정책과 -1972, 2014.3.26.),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 운영규정】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경고(5명) - 전 평생교육원장 교수 ○○○ 등 5명
46. 교직원의 자녀 입학 전형 등 참가 부적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교수 2명이 자녀가 지원한 대학원 입학전형에 회 피 신청 없이 합격자 사정 위원 등으로 참여 - 해당 대학은 지원자에 대한 구술고사 채점표 미보관 ○ 주임교수가 아닌 교수 11명이 일반전형 구술 고사 위원장으로 참여 <p>【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, 전북 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 제5조 및 전북대학교 일반 대학원 특별전형 입학시험 관리계획(2012~2015)】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경고(4명) - 전 예술대학장 교수 ○○○ 등 4명 ○ 주의(9명) - 영어교육과 교수 ○○○ 등 9명
47. 계약학과 입시수당 지급 부적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입시수당지급 기준액을 상회하여 입시수당 지급 (13명, 42건, 9,907,600원) <p>【교육과학기술부 대학 입시업무 관련 운영수당 지급기준 (2012), 전북대학교 입시 운영수당 지급기준】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주의(8명) - 전 산학협력단장 등 8명 ○ 시정(회수) - 부적정하게 지급된 계약학과 입시수당 합계 6,437,600원을 관련자로부터 각각 회 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
【 시설·기자재학교안전 】		
48. 전문공사 계약체결 등 업무처리 부적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전문공사업 미등록 5개 업체와 계약 체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경고(4명) - 전 시설관리과 시설 5급 ○○○ 등 4명 ○ 주의(2명) - 시설관리과장 기술4급 ○○○ 등 2명

지 적 건 명	지 적 내 용	처 분
	<p>【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】</p>	<p><별도조치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고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해당 전문공사업 등록 없이 공사를 시공한 (주)○○종합건설 대표 ○○○ 등 5명을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9조 제1항 위반혐의로 제96조 제1항에 따라 각각 고발
<p>49. 건축공사 감리 부적정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인문사회관 신축공사(연면적 13,332㎡)를 추진하면서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미지정 ※ 연면적 100㎡ 초과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해야 함 <p>【건축법 제11조, 제25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】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주의(3명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시설관리과장 기술4급 ○○○ 등 3명
<p>50. 설계용역 검사 부적정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산학협력지원센터 신축 등 4건 공사의 설계용역을 추진하면서 각 단계별로 설계도서 승인요청을 하지 않는데 대하여 시정조치 미실시 <p>【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6조,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3항】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주의(9명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 시설관리과장 기술4급 ○○○ 등 9명
<p>51. 시설공사 설계변경 부적정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바닥 마감자료 두께 조정은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임의 설계변경 후,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동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당초 계약 보다 높은 단가를 적용하여 공사비 9,167천원 낭비 ○ 국제교류어학원 신축(2차) 등 6건 공사의 관급자재 운반거리 단축에 따라 절감되는 공사비 합계 4,431천원을 감액하지 않고 준공대가에 포함하여 지급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경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시설관리과 시설6급 ○○○ ○ 주의(9명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 시설관리과장 기술4급 ○○○ 등 9명 ○ 시정(회수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부적정하게 조정한 “BIC도서관 신축공사(7차)” 설계변경 공사비 9,167천원을 해당 시공업체로부터 회수하고, 감액하지 않고 지급한 6건의 관급자재 운반공사비 합계 4,431천원을

지 적 건 명	지 적 내 용	처 분
	<p>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및 제 66조,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및 제19조의5】</p>	<p>해당 시공업체로부터 각각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</p>
<p>52. 시설공사 등 부적정</p>	<p>○도서관 신축 등 8건의 공사에서 과다 또는 중복 계상된 36,894천원 상당의 공사비에 대하여 감액 또는 재시공 없이 준공 대가 지급</p> <p>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13조 및 제14조,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및 제55조,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조】</p>	<p>○ 주의(12명) - 시설관리과장 기술4급 ○○○ 등 12명</p> <p>○ 시정(회수, 재시공) - 감액하지 않고 지급한 7건 공사비 합계 31,122천원을 해당 시공업체로부터 각각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하고, - 부적정하게 시공한 3건 (공사비 5,772천원 상당)에 대하여 해당 시공업체로 하여금 재시공 토록 조치</p> <p>○ 통보 - 향후, BIC도서관 신축공사 유리공사비 낭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및 착공단계부터 감독 및 검사 철저</p>
<p>53. 건설공사 법정경비 정산 부적정</p>	<p>○ 목적 외로 사용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7,906천원 감액 조정 미실시</p> <p>○ 목적 외로 사용된 환경관리비 21,675천원 미정산</p> <p>【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1항,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, 제8조 및 [별표2],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제3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】</p>	<p>○ 주의(11명) - 시설관리과장 기술4급 ○○○ 등 11명</p> <p>○ 시정(회수) - 정산하지 않고 지급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(6건) 합계 7,906천원과 환경관리비(7건) 합계 21,675천원을 해당 시공업체로부터 각각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</p>

지 적 건 명	지 적 내 용	처 분
54. 학생 수련·체험활동 안전관리 부적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학생 수련·체험활동(9회) 시 수학여행·수련활동 활성화위원회 미구성, 사전 현장답사 미실시 등 학생 안전관리 소홀 <p>【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 제5조, “수학여행·수련 활동 등 현장 체험학습 운영 매뉴얼(구, 교육과학기술부 기획담당관-3829, 2010. 10. 14.)” 및 “수련 활동 관련 유의사항(교육부 학생자치과-787, 2013. 2. 25.)】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주의(7명) - 전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 고등학교 교사 ○○○ 등 7명